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찬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92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2.

발 의 자 : 이찬열 · 황주홍 · 김종회

박광온 · 안규백 · 신경민

이춘석 · 김해영 · 전혜숙

고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, 제27조, 제28조).

법률 제 호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
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
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별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제26조(별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27조(별칙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	<p>제28조(별칙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